

# 2018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학점은행제 길라잡이**」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제도 안내서입니다. 본 자료는 **2018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경사항 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http://www.cb.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학점인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NTS

<p><b>I. 학점은행제 소개</b></p> <p>02 1. 학점은행제 정의 02 2.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02 3. 학력인정 04 4.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안내 05 5.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06 6.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p>	<p><b>II. 학습자등록신청</b></p> <p>08 1. 학습자등록신청이란? 08 2. 신청기간 및 방법 12 3.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p>	<p><b>III. 학점인정신청</b></p> <p>16 1. 학점인정신청이란? 16 2. 신청기간 및 방법 20 3. 기타 신청 22 4. 학점원 소개 및 학점인정기준 24 ① 평가인정학습과정 27 ② 학점인정대상학교 28 ③ 시간제등록 29 ④ 자격 30 ⑤ 독학학위제 31 ⑥ 국가무형문화재</p>	<p>32 5. 학점인정 주의사항 32 ①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33 ②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 34 ③ 중복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 35 ④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35 ⑤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p>
<p><b>VII. 부록</b></p> <p>60 1. 학점은행제 학습자 현황 61 2. 17개 시·도교육청 방문접수처 62 3. 학점은행제 증명서</p>	<p><b>VI. 학습지원</b></p> <p>48 1.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50 2. 상담서비스 55 3. 학습도움자료</p>	<p><b>V. 제도 활용</b></p> <p>44 1. 시험 응시자격 부여 45 2. 자격(면허) 취득</p>	<p><b>IV. 학위신청</b></p> <p>38 1. 학위신청이란? 39 2. 신청기간 및 방법 40 3. 학위수여요건 40 ① 학위수여요건 41 ② 타전공 학위수여요건</p>
<p><b>VIII. 오시는 길</b></p> <p>72 주소, 지하철, 버스</p>			



## 표 목차

- 04 표 1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 08 표 2 일반적인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 09 표 3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 10 표 4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13 표 5 학사학위 개설 전공
- 14 표 6 전문학사학위 개설 전공
- 16 표 7 일반적인 학점인정 신청기간
- 17 표 8 학점인정 신청방법 및 접수처
- 18 표 9 신청 학점원별 제출서류
- 20 표 10 기타 신청종류 및 내용
- 21 표 11 기타 신청종류별 신청방법
- 23 표 12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요약표
- 28 표 13 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29 표 14 학위종류별 인정 가능한 자격의 수
- 30 표 15 독학학위제 이수 과정별 인정 학점
- 31 표 16 국가무형문화재 이수등급별 인정학점 및 증빙서류
- 33 표 17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 33 표 18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
- 34 표 19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및 예시
- 39 표 20 일반적인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 40 표 2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 40 표 22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적용 기준
- 41 표 23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 44 표 24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시험
- 45 표 25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 48 표 26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 49 표 27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 51 표 28 전화상담 범위
- 52 표 29 온라인 일반상담 구분
- 56 표 30 학점은행제 리플릿 종류
- 56 표 31 각종 온라인 신청 매뉴얼 종류
- 61 표 32 17개 시·도교육청 방문접수처

## 그림 목차

- 02 그림 1 학점은행제 이용사례
- 03 그림 2 대한민국 학제
- 05 그림 3 학점은행제 신청 흐름도
- 06 그림 4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흐름도
- 12 그림 5 최종학력별 선택 가능한 학위과정
- 25 그림 6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검색 화면
- 26 그림 7 과목별 개설 교육훈련기관 검색 화면
- 32 그림 8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 32 그림 9 학기의 구분
- 38 그림 10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절차
- 50 그림 11 콜센터상담 도식도
- 53 그림 12 방문상담 신청화면
- 55 그림 13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화면
- 60 그림 14 학습자등록 현황
- 60 그림 15 학위취득자 현황

# I. 학점은행제 소개

1. 학점은행제 정의
2.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3. 학력인정
4.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안내
5.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6.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 I. 학점은행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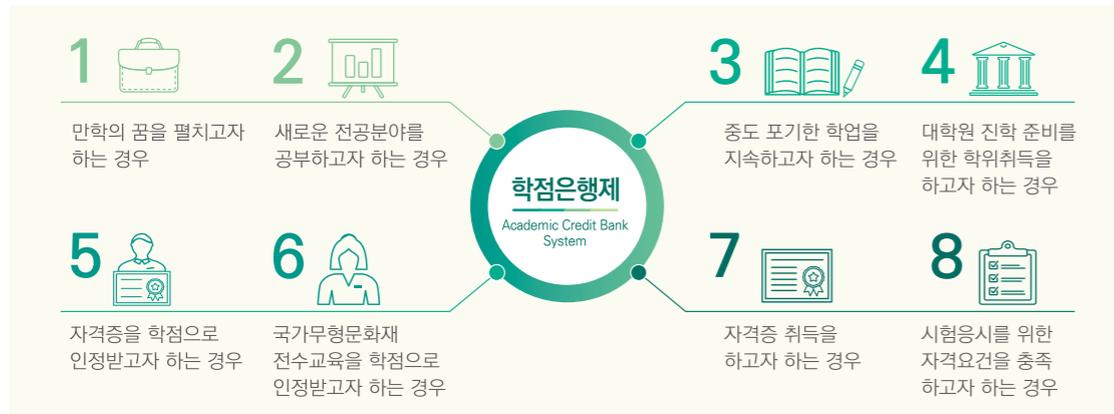
## 1. 학점은행제 정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여,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학점은행제 이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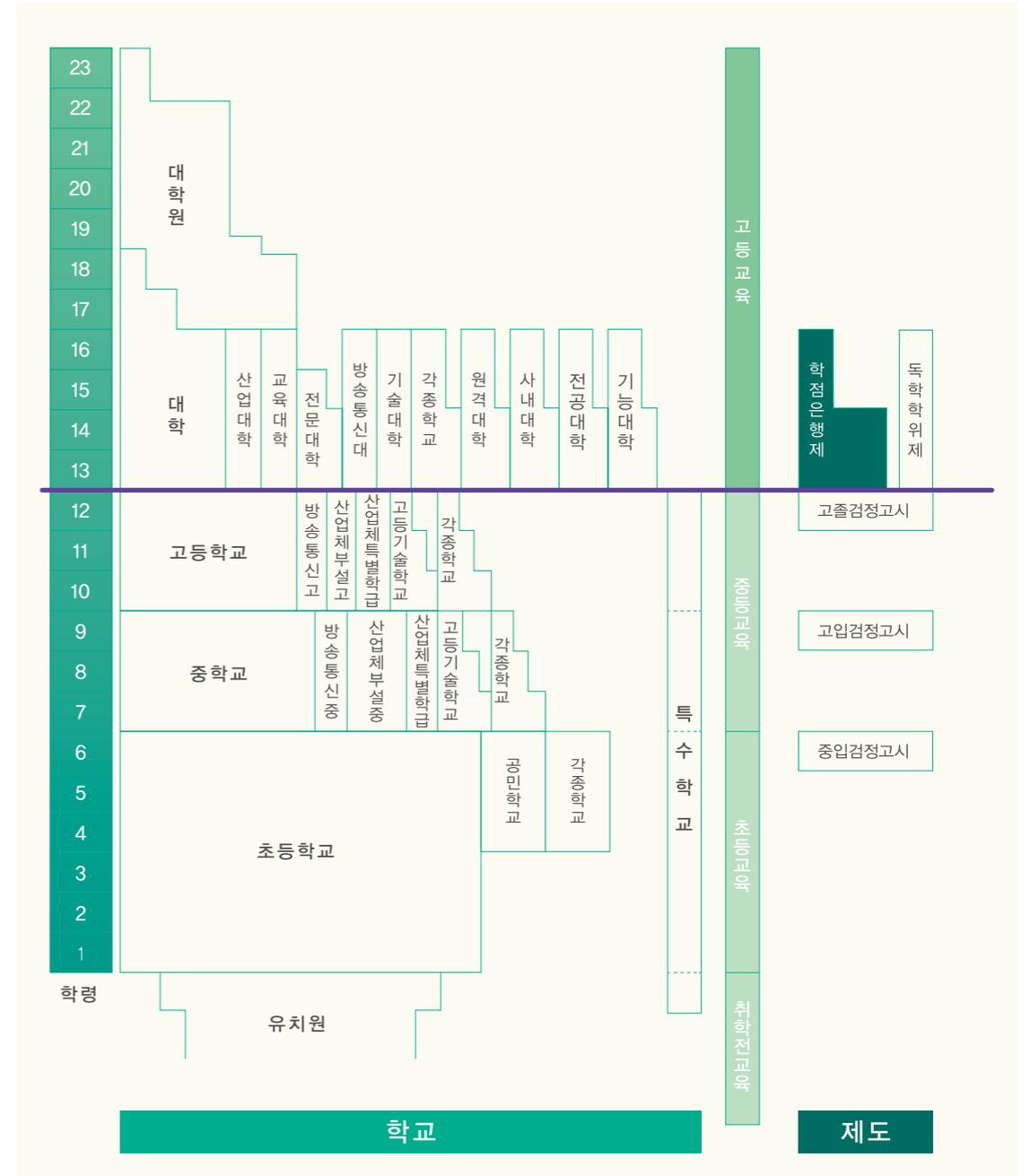


## 3.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림 2] 대한민국 학제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시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사 학위취득 시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4.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안내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에 기반이 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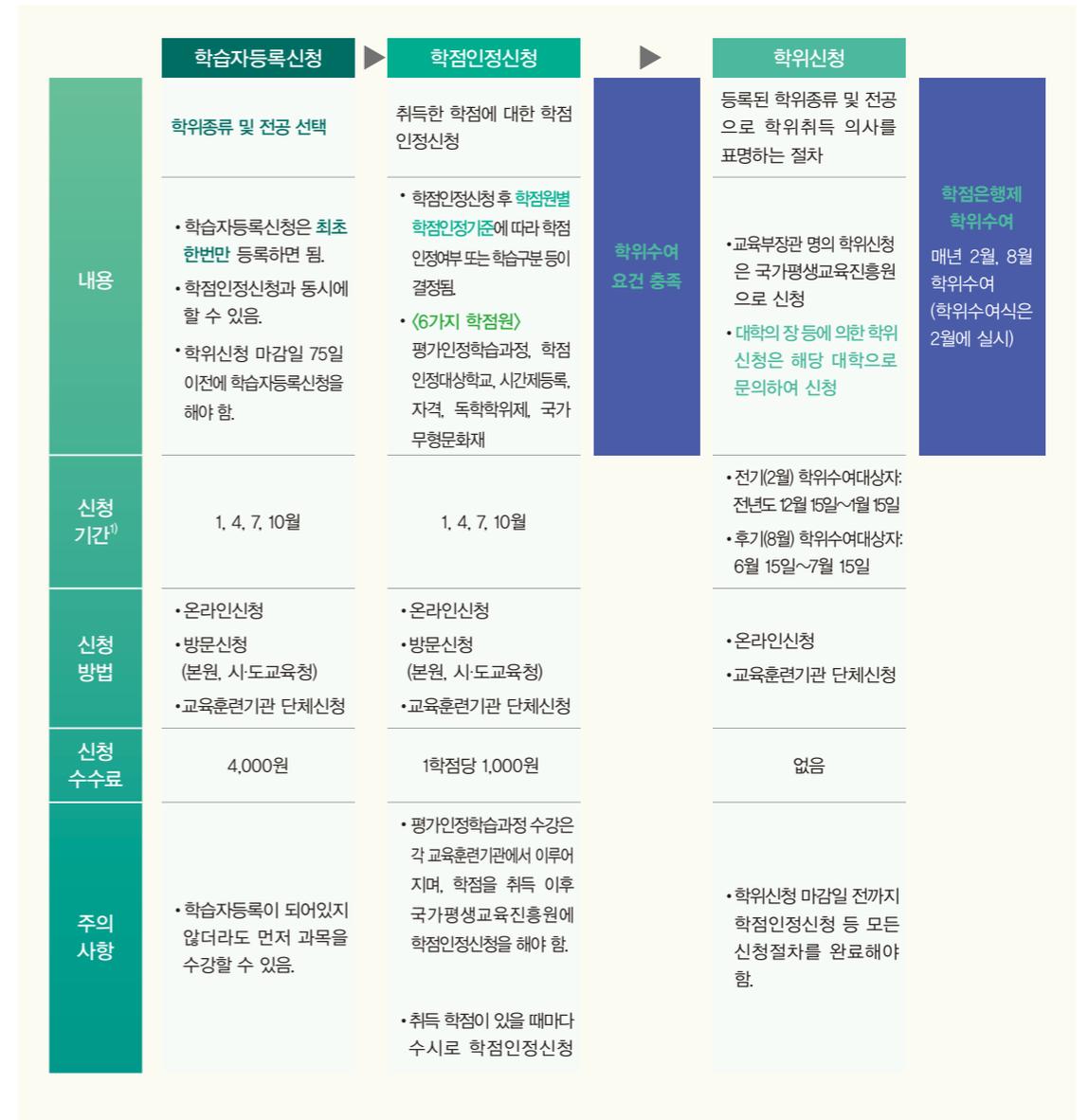
[표 1]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구분	비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15. 03. 27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09. 25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2. 31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2015. 10. 20 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2016. 01. 06 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2018. 01. 09 개정
제23차 표준교육과정	2018. 04. 11 고시
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2017. 07. 31 고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3. 05. 10 개정
2018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 계획 공고	2017. 11. 27 공고

#### 5.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학습자등록신청,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학습자는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그림 3] 학점은행제 신청 흐름도



1) 자세한 신청기간 및 학점원별 신청방법은 접수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매분기 공지되는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은 사전접수를 받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훈련기관(대학)을 통해 확인해야 함.

### 6.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흐름도이므로 참고자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4]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흐름도



2)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4) 전문학사 3년제 과정인 이료 전공은 전공 54학점 이상(전필 포함), 교양 21학점 이상,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전문학사 타전공 과정으로 진행할 경우 전필을 포함하여 전공 4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 II. 학습자등록신청

1. 학습자등록신청이란?
2. 신청기간 및 방법
3.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 II. 학습자등록신청

### 1. 학습자등록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학위종류 및 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학습자등록신청 주의사항

1.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신청	17.12.15 ~ 18.01.31	4.2 ~ 4.30	6.15 ~ 7.31	10.1 ~ 10.31	
방문 신청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17개 시·도교육청	1.2 ~ 1.15	4.2 ~ 4.10	7.2 ~ 7.15	10.10 ~ 10.18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각 기관별로 상이함(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				

[표 2] 일반적인 학습자 등록 신청기간

[표 3]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학습자등록은 온라인, 방문,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구분	방법
온라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신청-신청 바로가기</li> <li>• 홈페이지-신청하세요-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신청</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li> <li>※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li> </ul>
방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li> <li>※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li> <li>• 17개 시·도교육청</li> <li>※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li> </ul>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li> <li>※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 상단 [교육기관 정보-교육기관 검색]에서 조회 가능함.</li> </ul>

※ 수수료 납부  
 - 방문신청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단, 시·도교육청 방문접수는 카드 결제 불가)  
 - 온라인신청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 시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4]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신청시스템 내에서 출력)</li> <li>• 최종학력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제출서류 면제)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li> <li>•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원본지참)</li> <li>• 최종학력증명서 1부</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에 따른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발급가능)</li> <li>- 대학 제적 : 제적증명서</li> <li>-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li> <li>- 대학 재학 또는 휴학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li> </ul> </li> <li>※ 대학을 2곳 이상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제적증명서의 경우 재적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동일한 경우 재학으로 간주)</li> <li>※ 석사 이상의 학력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 [민원-의료인 면허 민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li> </ul> </li> <li>•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여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홈페이지-공지사항 730번 참고)</li> <li>•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37번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관련 안내'를 참고</li> </ul> </li> <li>•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방문신청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학력인정증명서] 및 [학력확인서] 제출</li> <li>-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제출(공문제출 시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li> <li>※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10488번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고시' 참고</li> </ul> </li> </ul>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자 :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확인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동의자)</li> <li>- 대학 제적·졸업자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제적·졸업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li> <li>•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은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 탑재)</li> </ul>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학력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여부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해야 함 (신청항점에 따라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기별 접수계획을 통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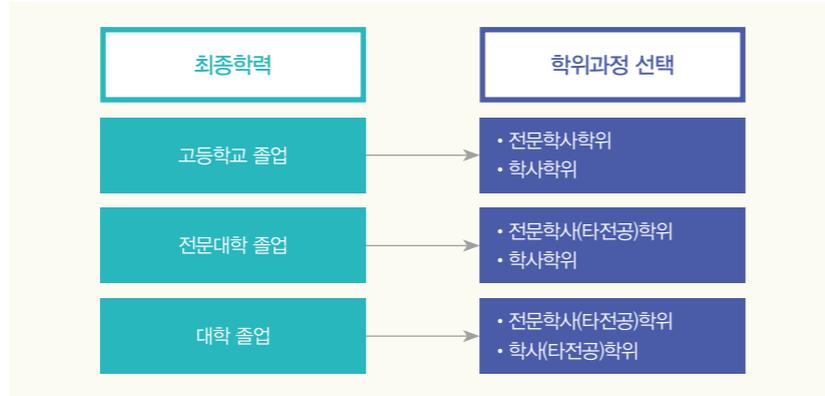
### 3.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학점은행제 학위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은 매년 새롭게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학위과정 및 전공에 따라 학위수여요건이 달라지며, 학위과정별 학위수여요건은 40, 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과정

학사학위는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의미하며, 전문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새로운 전공분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최종학력별 선택 가능한 학위과정



#### 전공

‘제23차 표준교육과정(2018.04.11 고시)’ 기준으로 학사 115개, 전문학사 110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학위종류별 전공 및 전공별 세부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5] 학사학위 개설 전공

#### · 학사학위 개설 전공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개수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1
간호학사	간호학	1
경영학사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 e-비즈니스학	4
경제학사	경제학	1
공학사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가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음향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29
관광학사	관광경영학,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	3
광고학사	광고학	1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3
무용학사	무용학	1
문학사	국어국문학, 노년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불교학, 사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17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1
미술학사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공예, 화훼조형학, 회화	10
미용학사	미용학	1
법학사	법학	1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방사선학, 안경광학, 의무기록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학, 치기공학, 지위생학	8
세무학사	세무학	1
수사학사	범죄수사학	1
신학사	가톨릭신학, 신학	2
예술학사	디지털아트학, 모델학,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5
음악학사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실용음악학, 음악학, 작곡, 피아노	8
이학사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5
지식재산학사	지식재산학	1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4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 패션비즈니스학	2
해양학사	항해학	1
행정학사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3

26개 학위, 115개 전공

※ '의상학' 전공과 '전자계산학' 전공은 폐지되었으므로, 신규 학습자등록신청이 불가  
 ※ 간호학사, 보건학사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경우,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이 가능함. 또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새로이 이수해야 함.

· 전문학사학위 개설 전공

[표 6] 전문학사학위 개설 전공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개수
가정전문학사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5
경영전문학사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5
공업전문학사	건축, 건축물관리, 게임그래픽, 게임디자인,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임베디드시스템,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차튜닝, 자동화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신재생에너지,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47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 관광식음료, 항공운항,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5
군사전문학사	군사행정, 군수관리, 지상전, 항공기술, 항공작전, 해상전	6
농업전문학사	관상원예, 농업경영	2
산업예술전문학사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귀금속공예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방송영상,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터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19
언어전문학사	영어, 일본어	2
생명산업전문학사	바이오공학, 애완동물관리	2
예술전문학사	공예, 국악, 기악, 뮤지컬,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9
이료전문학사	이료(3년제)	1
행정전문학사	경찰행정,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4
체육전문학사	바둑,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3

13개 학위, 110개 전공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전공 중 3년제는 '이료' 전공만 개설되어 있음. 그 외 전공은 모두 2년제 과정임.



### III. 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신청이란?
2. 신청기간 및 방법
3. 기타 신청
4. 학점원 소개 및 학점인정기준
  - ① 평가인정학습과정
  - ② 학점인정대상학교
  - ③ 시간제등록
  - ④ 자격
  - ⑤ 독학학위제
  - ⑥ 국가무형문화재
5. 학점인정 주의사항
  - ①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 ②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
  - ③ 중복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
  - ④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 ⑤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 III. 학점인정신청

#### 1.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같은 기간에 신청 가능).

##### 학점인정신청 주의사항

1. 취득한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이수계획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가급적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7] 일반적인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신청	17.12.15 ~ 18.01.31 (㉔ 12.15 ~ 1.15)	4.2 ~ 4.30	6.15 ~ 7.31 (㉔ 6.15 ~ 7.15)	10.1 ~ 10.31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교육청	4.2 ~ 4.10	7.2 ~ 7.15	10.10 ~ 10.18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각 기관별로 상이함(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㉔-2월 학위수여대상자 / ㉔-8월 학위수여대상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 상단 [교육기관 정보-교육기관 검색]에서 조회 가능함.

[표 8]  
학점인정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학점인정 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입니다.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신청-신청 바로가기</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li> <li>※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li> </ul>
방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li> <li>※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li> <li>• 17개 시·도교육청</li> <li>※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li> </ul>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li> <li>※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 상단 [교육기관 정보-교육기관 검색]에서 조회 가능함.</li> </ul>

#### ※ 참고사항

- ①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는 도착 마감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도착해야 함.
  - ※ 제출기한은 해당 분기 접수계획 참고
-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단,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마다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 ③ 수수료 납부
  - 방문신청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단, 시·도교육청 방문접수는 카드 결제 불가)
  - 온라인신청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 신청 후,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하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또는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는 '각종접수현황'에서 접수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원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9] 신청 학점원별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평가인정 학습과정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학점인정 대상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li> <li>•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li> <li>※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li> </ul>	좌동
시간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li> <li>•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li> </ul>	좌동
자격	<p>없음</p> <p>※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당해 분기 접수 계획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li> <li>• 자격 사본(원본지참)</li> <li>※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li> </ul>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li> <li>•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li> <li>※ 온라인신청 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li> </ul>	좌동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등급	제출서류	등급	제출서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없음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 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		이수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서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탑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서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탑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b>온라인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 가능</b></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li> <li>•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은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 탑재)</li> </ul>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학점인정 불가).  
 ※ 2015년 9월 28일 이후 취득한 자격을 학점인정신청 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요망

### 3. 기타 신청

등록된 학습자 중, 본인의 학습계획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 10] 기타 신청종류 및 내용

신청종류	내용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처리 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학위 및 전공변경	현재 진행 중인 학위종류·전공을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학위연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절차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
재심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참고사항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이 처리되면, 이미 인정받은 학점의 인정내역(학습구분 등)은 변경 또는 연계 신청한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됨.

### 신청방법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 접수계획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분기마다 공지 되는 접수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11] 기타 신청종류별 신청방법

신청종류	신청방법	주의사항	수수료
학위 및 전공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신청</li> <li>※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신청</li> <li>•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li> <li>※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공지 628번 [매뉴얼] 학 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등 신청방법' 참고</li> </ul>	제출서류 없음. 신청 후, 3일 이내 처리됨.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은 분기별 1회에 한해 신청가능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학점인정신청이 가능	없음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신청 (본원, 시·도교육청)</li> <li>•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li> <li>① 재심신청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li> <li>② 해당 과목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이상의 날인 필) 등</li> </ul>	

※ 학위연계 및 학위및전공변경 신청은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재심신청서를 원장이 고시한 일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일정은 당해 접수계획을 참조

#### 4. 학점원 소개 및 학점인정기준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수업환경(시설·강사조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시간제등록	자격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대학재적(재학생 이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게 하는 제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기준을 반드시 확인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의 기준'에 따라 인정됨.

#### 학점인정기준

[표 12]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요약표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이수제한학점		중복 과목 판단
		연간/학기	1개 기관 <sup>1)</sup>	
평가인정 학습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sup>+</sup>) 이상 또는 PASS 과목</li> <li>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li> <li>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li> </ul>	○	○	○
학점인정 대상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대학은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li> <li>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li> <li>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li> <li>학습구분 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학위종류 및 전공인 경우 :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li> <li>-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li> </ul> </li> </ul>	○ (32페이지 참고)	x	○
시간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li> <li>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li> </ul>	○	x	○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li> </ul> </li> <li>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li> <li>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li> <li>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li> </ul>	x	x	x
독학학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li> <li>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li> </ul>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적용		○
국가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급별 인정 학점 : 31페이지 참고</li> <li>학습구분 결정 기준 : 표준교육과정 전공과 동일한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 전필, 동일하지 않은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 일선</li> </ul>	x	x	x

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함.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을 의미하며,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 법령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입니다.

학점인정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중복과목 기준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되나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과목이 아닌 경우 교양으로 인정)

평가인정학습과정 수강비용 및 기간 등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기관별 평가인정학습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교육기관 정보-교육기관 검색]**에서 확인
-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운영 제반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문의

교육훈련기관 유사명칭 혼동 주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기관명칭을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학습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설업체 이용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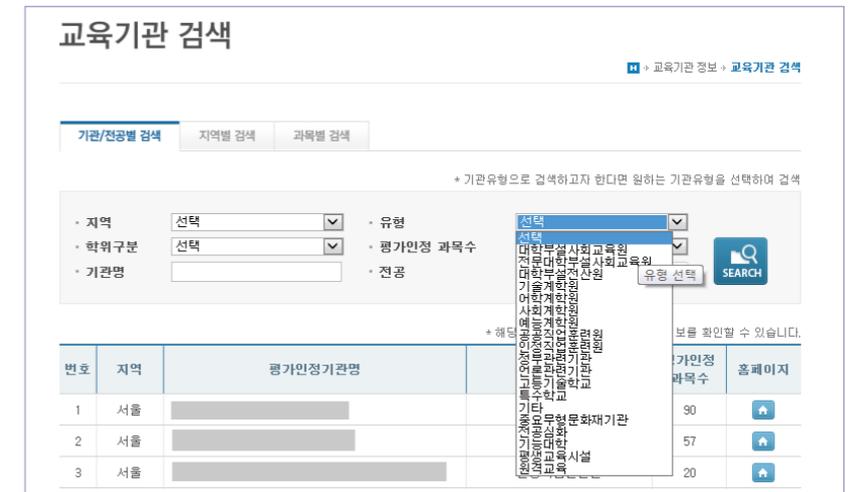
※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소위 학점은행 매니지먼트 또는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설대행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확인방법

2018년 4월 현재, 평가인정학습과정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총 437개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원격교육훈련기관은 총 75개이고, 나머지 기관은 출석하여 수업을 이수하는 출석교육훈련기관입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검색 : 홈페이지-교육기관 정보-교육기관 검색

[그림 6]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검색 화면



- 과목별 개설 교육훈련기관 검색 : 홈페이지-표준교육과정-학사/전문학사/교양/전공교양호환과목/국가무형문화재-과목명-개설교육훈련기관

②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학교,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3.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그림 7] 과목별 개설 교육훈련기관 검색 화면



학점인정기준

-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 제적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예) 81학점을 취득하고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 1학점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이 없을 경우 한 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 불인정)
  - \* 성적 없이 'P' 등으로 이수결과만 표기 된 과목 중, 학점이 기재되어 총 취득학점에 포함된 경우에는 학점인정 가능함.
- 중복과목 기준 적용
  - \* 단, 동일한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간에는 중복과목 기준 적용하지 않음(재수강 제외).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 중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적용(32페이지 참고)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라 학점인정
  -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중퇴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 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③ 시간제등록

시간제등록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학재적(재학)생 이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게 하는 제도

학점인정기준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 불인정)
-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중복과목 기준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은 학점인정대상학교와 동일함.**

이수방법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인원 등은 해당 학교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등록의 시행여부, 개설과목, 수강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해야 함.**
- 1개 대학에서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됨.
- 여러 학교를 병행하여 학기당 연간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음.

[표 13] 1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근거조항	1개 대학 최대 이수 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해당 대학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학점

사이버대학 종합정보 : [www.cuinfo.net](http://www.cuinfo.net)  
전국 사이버대학 및 학과소개, 입학정보 안내

④ 자격

학점은행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대상 자격의 선정기준, 각 자격별 인정학점,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0차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기준

-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기준

학위종류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의 수
학사	최대 3개(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만 인정)
전문학사	최대 2개(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만 인정)
타전공(학사, 전문학사)	최대 1개

- 동일직무 내 속한 자격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란 자격 학점인정기준 내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함.
- 폐지된 종목의(통합 자격 제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변경된 종목을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
- 통합 전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시행일 이후, 통합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따라서 통합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공과 연계되는 자격은 '전공필수'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증은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함.
- 전공변경, 학위연계 신청 시 당해 고시한 자격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

자격 학점인정기준 확인하기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제도소개-학점인정대상-자격] 또는 [알림방-자료실-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4] 학위종류별 인정 가능한 자격의 수

⑤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 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독학학위제 제도 전반, 응시요건,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기준

• 이수 과정별 인정학점

과정	인정학점
교양과정인정시험 (1과정)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과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과정)	

[표 15] 독학학위제 이수 과정별 인정 학점

- 1과정부터 4과정까지의 과목별 학점인정은 1개의 학위과정 취득에만 적용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기준 적용
- 중복과목은 1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
  -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 과목과 1~3과정 과목 간에는 중복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학습구분 결정기준
  - 1과정 : 교양
  - \* 단, 일부 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 예)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가 독학학위제 '경영학개론' 과목 합격 시, 전공필수와 교양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 가능함.
  - 2~4과정 :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 주의사항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는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불가
  - 1과정부터 4과정까지 과목별 학점인정은 1개의 학위과정 취득에만 적용

⑥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학점은행제는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학점인정기준

• 이수등급별 인정학점

[표 16] 국가무형문화재 이수등급별 인정학점 및 증빙서류

이수등급	인정학점	증빙서류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보유자	140학점	없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50학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	30학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 확인서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탑재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이상	4학점	

- 주의사항
  - 국가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 1999년 7월 19일 이전 선정된 '보유자 후보'는 60학점, '전수교육조교'는 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는 50학점으로 인정
  - 전수생의 경우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장이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함(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 전공과 동일한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 전공필수,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 예) 강령탈춤 이수자가 학점은행제 전통연희과 강령탈춤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30학점 인정, 그 외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선택 30학점으로 인정

### 5. 학점인정 주의사항

#### ①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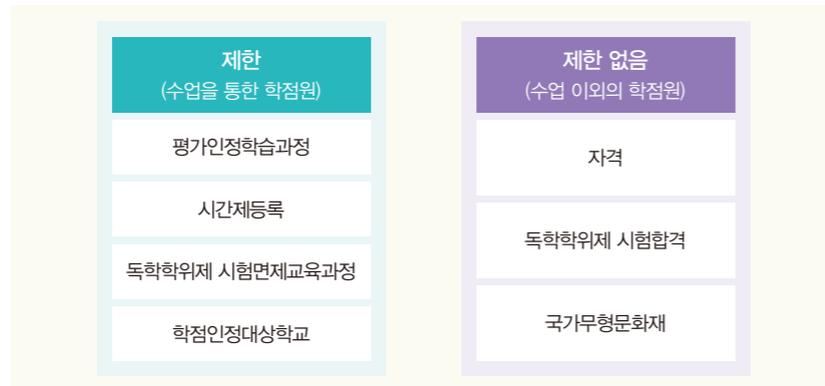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 1년/1학기 제한학점을 적용하는 학점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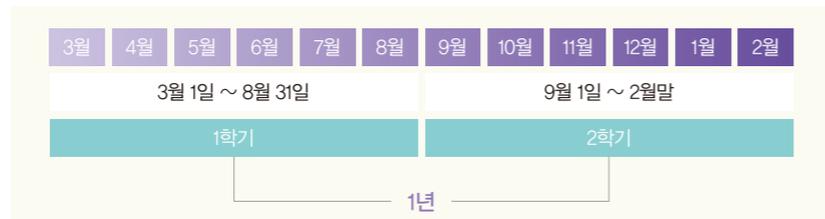
[그림 8]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 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 (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림 9] 학기의 구분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학위취득 마지막 학기에는 학기 구분을 아래 같이 적용함.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 2018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8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표 17]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 ② 1개 교육훈련 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 18]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

구분	최대 인정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③ 중복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각종 고시·규정개정-‘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표 19]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및 예시

구분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예시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영어 = 영어 ENGLISH = English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3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 활용 = SW활용 EDPS = E,D,P,S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I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 주의사항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이동학(이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④ 학점은행제 전문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8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예)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 절사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불가)

⑤ 대학 재적 (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



## IV. 학위 신청

1. 학위신청이란?
2. 신청기간 및 방법
3. 학위수여요건
  - ① 학위수여요건
  - ②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 IV. 학위신청

## 1. 학위신청이란?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학점인정신청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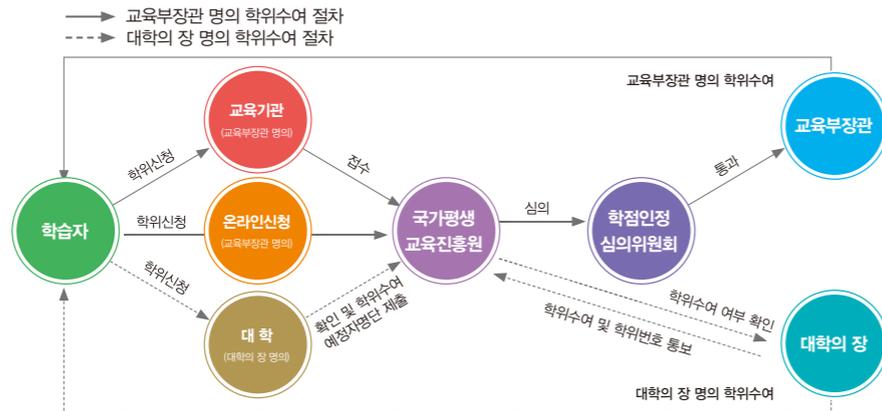
-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위수여 절차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 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이루어집니다.

※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그림 10]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절차



## 2. 신청기간 및 방법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

[표 20] 일반적인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접수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기(2월): 전년도 12월 15일~1월 15일 후기(8월): 6월 15일~7월 15일	온라인신청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공지 635번 [매뉴얼] 교육부장관 명의 온라인 학위 신청방법' 참고
	교육훈련기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해당 대학	전기(2월): 12월 1일 ~ 12월 14일 후기(8월): 6월 1일 ~ 6월 14일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

### ※ 주의사항

- 일반적인 학위신청기간 안내입니다. 자세한 신청기간은 반드시 당해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분기(10월), 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2분기(4월) 신청기간 내에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위수여예정자는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신청 마감 후 학위요건심사 결과확인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함. 정해진 기간동안 [학위합격/탈락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교육훈련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학위신청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대학을 통해 확인해야 함).

### 3. 학위수여요건

#### ① 학위수여요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수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2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함.				
⑥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⑦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함.

#### 기술계학원 교양학점 적용 기준

기술계학원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기술계학원'에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양 학점 취득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표 22]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적용 기준

	기술계학원에서 이수한 총 학점	교양학점 최소 이수학점
학사	8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문학사	65학점 이상(3년제)	1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2년제)	9학점 이상

\* 기술계학원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교육기관정보-교육기관검색-기관/전공별 검색 내 '유형: 기술계학원']에서 검색 가능

#### ② 타전공 학위 수여요건

타전공 학위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학위과정입니다.

※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타전공) 또는 전문학사(타전공), 전문학사 소지자는 전문학사(타전공)를 선택할 수 있음.

[표 23]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학사(타전공) 학위	전문학사(타전공) 학위	
	2년제	3년제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필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타전공 학위과정 진행 시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또한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가능함(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따라서 자격증과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학점취득시기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졸업한 전문대학, 대학 학점은 타전공 과정에서 인정 불가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여부 및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해야 함.



## V. 제도 활용

1. 시험 응시자격 부여
2. 자격(면허) 취득



## V. 제도 활용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학위수여로 각종 자격 취득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취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행기관 및 시험주관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1. 시험 응시자격 부여

[표 24]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시험

시험명	응시 요건
국가기술자격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대상학교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li> <li>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li> <li>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a href="http://q-net.or.kr">http://q-net.or.kr</a>, 1644-8000)</li> </ul>
독학학위제 시험	<p>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학점을 인정받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과정 :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li> <li>4과정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 자</li> <li>문의처 : 독학사관리실 (<a href="http://bdes.nile.or.kr">http://bdes.nile.or.kr</a>, 1600-0400)</li> </ul>
공인회계사 시험	<p>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의처 : 금융감독원(<a href="http://cpa.fss.or.kr">http://cpa.fss.or.kr</a>, 국번없이 1332)</li> </ul>
사법시험	<p>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의처 : 법무부 사법시험 (<a href="http://www.moj.go.kr/barexam">www.moj.go.kr/barexam</a>, 02-2110-3397, 3525)</li> </ul>
편입학 시험	<p>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li> </ul>
대학원 입학 시험	<p>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p> <p>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li> </ul>

### 2. 자격(면허) 취득

[표 25]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자격명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2급	<p>「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a href="http://lic.welfare.net">http://lic.welfare.net</a>, 02-786-0845)</p>
보육교사 2급	<p>「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발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a href="http://chrd.childcare.go.kr">http://chrd.childcare.go.kr</a>)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p> <p>「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p> <p>※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a href="http://chrd.childcare.go.kr">http://chrd.childcare.go.kr</a>, 1661-5666)</li> </ul>
평생교육사 2, 3급	<p>「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계좌·자격실(<a href="http://ledu.nile.or.kr">http://ledu.nile.or.kr</a>, 1577-3867)</li> </ul>
건강가정사	<p>「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a href="http://www.familynet.or.kr">http://www.familynet.or.kr</a>, 1577-9337)</li> </ul>
2급 정사서	<p>「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a href="http://www.klkr.org">http://www.klkr.org</a>, 02-537-6117)</li> </ul>
이·미용사	<p>「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li> </ul>



자격명	자격 요건
한국어교원 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a href="http://kteacher.korean.go.kr">http://kteacher.korean.go.kr</a> , 02-2669-9671~4)
청소년지도사 2, 3급 (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a href="http://q-net.or.kr">http://q-net.or.kr</a> , 1644-8000)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 href="http://acei.arte.or.kr">http://acei.arte.or.kr</a> , 070-7825-1460)

※ 주의사항  
 - 위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요건 및 변경 사항은 해당 자격 발급처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되지 않음.

## VI. 학습지원

1.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2. 상담서비스
3. 학습도움자료

## VI. 학습지원

### 1.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표 26]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종류	내용	발급형태
학위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국문/ 영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성적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이수과목, 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학점인정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이수과목, 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국문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 (사법시험 제출용)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 또는 2017년 3월 10일 이후 수강을 시작한 과목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	

※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상에 성적이 기재되고 평점에 포함되는 학점원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며, 학점인정대상학교, 자격, 독학사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기재되지 않으며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현재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발급수수료

[표 27]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구분	신청방법	발급수수료
인터넷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신청]에서 '증명서 신청' 메뉴 클릭	국문/영문: 500원 (추가 1통당 100원)
방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신분증 지참)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국문: 300원 영문: 500원
우편	'증명서발급신청서'와 '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우편요금 입금증' 사본을 팩스(02-3780-9850)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74번 '증명서 발급안내 및 우편수령 신청서' 참고	국문: 300원 영문: 500원 (우편요금 별도)

※ 주의사항  
- '학위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학위수여일 이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음.  
-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위임장: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탑재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인터넷발급만 가능하며, 일정학점(전문학사: 40학점, 학사: 100학점)이상 인정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습도움방-신청방법안내-증명서신청] 내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함. '성적증명서' 제출로 시험 응시 가능함. 제출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격 문의처를 통해 확인

## 2. 상담서비스

### 전화상담

학점은행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지원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국번없이)1600-0400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이용방법 : 문의사항에 따른 번호를 선택하고, [학번] 또는 [생년월일] + [#] 입력 후 자동응답서비스 및 상담원 연결

- ※ 학번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완료한 학습자는 학점은행제 학번이 부여되고, 독학학위제 시험에 응시하여 한 과목이라도 합격한 학습자는 독학학위제 학번이 부여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에 [학습자 학번 찾기] 메뉴를 통해 학번조회가 가능함.
- ※ 개인정보 확인 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학번 또는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 ※ 학습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
- ※ 학습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상담 내용은 자동 녹취
- ※ 학점은행제 콜센터는 발신자 부담서비스임.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급증하여 상담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표 28] 전화상담 범위

구분	상담가능여부	기타
제도전반	가능	
학점취득방법(학습구분, 중복과목 등)	가능	5개 이상 과목은 온라인으로 문의
행정사항	가능	
학습설계	불가	온라인 또는 방문만 가능

[그림 11] 콜센터상담 도식도



**온라인 일반상담**

학점은행제 이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온라인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도움방-상담신청-온라인 일반상담-신청하기]에서 문의내용 작성

[표 29] 온라인 일반상담 구분

구분	문의 내용
제도전반	학점은행제 제도전반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 ※ 전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제도소개] 부분을 참고한 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의
학점취득방법	6가지 학점취득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 문의
중복과목	홈페이지-제도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학점인정 주의사항-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부분을 확인 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 간의 중복여부 문의 ※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10178번글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고시」참조
학습구분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원의 학습구분 문의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전체 학점에 대한 문의는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을 이용 시 답변 가능
학점인정신청/등록	학점인정신청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 문의

※ 보유한 모든 학점의 학습구분 및 학위수요조건 검토는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 이용 시 답변이 가능함(홈페이지-[문의하세요]-[온라인 학습설계 상담] 신청).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이란 학습자가 보유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예상' 결과를 확인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수요조건에 맞는 학점이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시스템입니다. 학습설계 상담은 학습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당해 기준에 따라 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학점인정내역은 학점인정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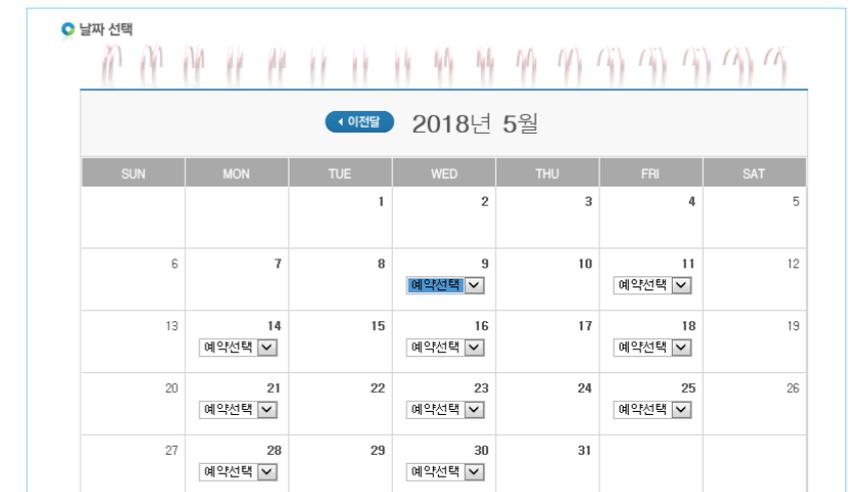
- 이용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도움방-상담신청-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에서 신청

- 학점은행제 미등록 학습자는 학습설계 상담신청 시 이수내역 확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
-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36번 '온라인 학습설계상담 매뉴얼'] 참조

**방문상담**

학습자들의 시간, 편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본원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2] 방문상담 신청화면





- 예약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학습도움방-상담신청-방문상담]에서 신청
  - 매월 15일부터 다음 달 방문상담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함(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등에 따라 방문상담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방문상담 예약증(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 상담현황-방문상담 예약/변경 메뉴를 통해 출력)
  - 보유학점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 증빙서류 미지참 시 상담서비스 제공 불가
- 대리인을 통한 방문상담 신청 시 필요서류
  - 위임장 1부(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472번 방문상담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학습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 기타 취득학점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및 방문상담 예약 확인증
- 기타 : 방문상담 시 제공되는 학습설계 상담 내용은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 3. 학습도움자료

#### 학점인정 표준 DB 검색 기능

「학점인정 표준DB」는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한 과목의 학습구분을 학점은행제 전공에 따른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선)으로 안내하는 메뉴입니다.

- 메뉴위치 : 홈페이지-학습도움방-학점인정 표준 DB
- 공개전공(2018년 4월 기준)
  - 학사 :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미용학, 컴퓨터공학 등 29개 전공
  - 전문학사 : 경영, 사회복지, 아동가족, 실용음악 전공
  - 교양
- 주의사항
  - ※ 학습과목의 중복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중복과목의 경우 한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학습과목의 중복여부는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통해 확인해야 함.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정은 본 메뉴와 관계없으며, 평가인정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서 고시한 과목명과 일치해야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됨.
  - ※ 확인되는 과목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함.

####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제공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학점은행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내용 : 이론과정(학점은행제도부터 FAQ까지), 실천과정(학습자등록부터 학위취득까지 신청절차와 주의사항)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클릭

[그림 13]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화면



**리플릿**

학점은행제 리플릿은 제도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종류별로 간단한 설명을 담고 있는 간행물입니다.

- 이용방법 :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간행물] '2018년 학점은행제 리플릿' 다운로드

[표 30] 학점은행제 리플릿 종류

번호	내용
PL1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PL2	학점은행제 학점취득방법
PL3	학점은행제 이용 시 주의사항
PL4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PL5	학점은행제 서식 작성방법
PL6	학점은행제 상담 신청방법
PL7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각종 온라인 신청 매뉴얼**

학점은행제 각종 온라인 신청 매뉴얼이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알림방-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매뉴얼 다운로드

[표 31] 각종 온라인 신청 매뉴얼 종류

매뉴얼 종류
교육부장관 명의 온라인 학위 신청방법
학점은행제 온라인 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방법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등 신청방법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온라인 학습설계상담 매뉴얼

**학점은행제 학습설계 로드맵**

학점은행제 학습설계 로드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설계를 지원하는 전공 맞춤형 안내서입니다.

- 이용방법 :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학사학위 과정의 전공별 학습설계 로드맵 다운로드
- 탑재전공(10개 전공) : 건축공학, 경영학, 멀티미디어학, 사회복지학, 시각디자인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실내디자인학
- 수록내용 : 전공별 학습과목 소개 및 학점취득방법 안내, 전적대학 이수과목에 대한 학습구분 판단 기준 및 사례, 학점취득계획 예시, 전공별 전필 및 전선 인정과목 현황 등
- ※ 제작 당시의 기준이 반영되었기에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음.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함.



## Ⅶ. 부 록

1. 학점은행제 학습자 현황
2. 17개 시·도교육청 방문접수처
3. 학점은행제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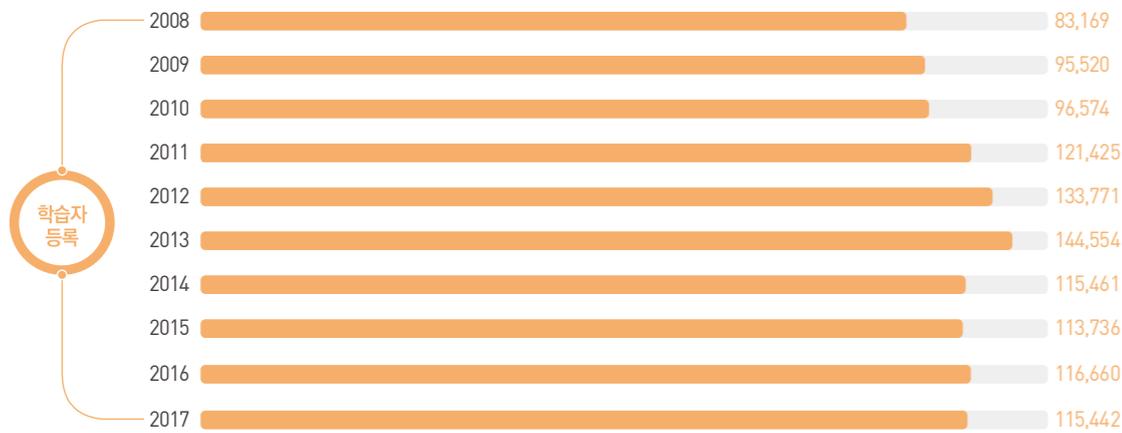


## Ⅶ. 부록

### 1. 학점은행제 학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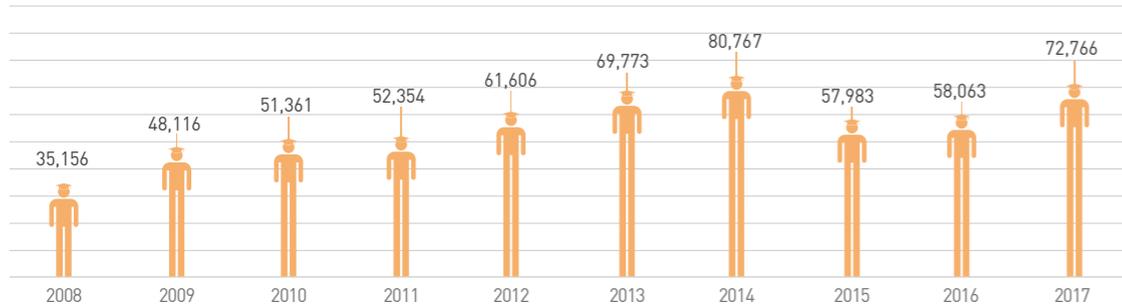
#### 학습자등록 현황

[그림 14] 학습자등록 현황



#### 학위취득자 현황

[그림 15] 학위취득자 현황



### 2. 17개 시·도교육청 방문접수처

[표 32] 17개 시·도교육청 방문접수처

교육청	부서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02)13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2-77)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	051)860-04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1동 455-1)
대구시교육청	총무과 민원실	053)231-057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수성2가 119-2)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2)420-8295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2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별관 1층 (화정동 657-37)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	042)616-8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2동 1294)
울산시교육청	총무과 고객지원팀	052)210-540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1층 고객지원팀(유곡동 250)
세종시교육청	행정과	044)320-325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보람동 664-15)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031)820-0538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금오동431-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	031)259-1052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 (권선동1234)
강원도교육청	지식정보과	033)259-0894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사농동 84)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	043)290-22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041)640-821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신경리 8-1)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063)239-340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 (효자동2가 1325)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061)260-0878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남악리 1457)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직업과	054)805-3425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갈전리 4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055)210-519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남교육청 제2청사 교육복지과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64)710-03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연동 311-46)

※ 교육청 방문접수 시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므로, 문의사항은 본원 콜센터(1600-0400)를 통해 문의 후 접수요망  
 ※ 교육청 방문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본원으로 서류를 발송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접수 불가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국문)

제 2018-0175361 호

**전문 학사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성 명 : **홍길동**  
 생 년 월 일 : **1910년 10월 10일**

전 공 : **컴퓨터네트워크 전공**  
 학위수여예정년월 : **2018년 8월**  
 학 위 종 류 : **공학전문학사**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18년 05월 14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담당자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영문)

**CREDIT BANK SYSTEM**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14,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Serial No. 2018-0175076 Date Issued: May 14, 2018

**Certificate of Degree Expected**

Name in Full:	GILDONG HONG
Date of Birth:	October 10, 1910
Sex:	Male
Major:	Computer Network
Expected Date to be Conferred:	August, 2018
Degree to be Conferred:	Associate degree of Engineering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expected to receive the above mentioned degree on August, 2018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ote: A Certificate is official if it is printed on light blue security paper and if the NILE President's signature is printed in blue..

5) 성적증명서(국문)

제 2018-0175291 호

### 성 적 증 명 서

학번(주민등록번호)	2000-0004211 (101010-*****)	성 명	홍길동
전 공	컴퓨터네트워크	학 위 종 류	공업전문학사

*****[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 구분 학습과목명 성적 학점 이수년월 교양 생활경제학 80 3 2007-06 교양 리더십관리 77 3 2007-06 교양총원기초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선 관광일본어 I 70 3 2007-06 원선 범죄학 88 3 2007-06 원선 관광법규 70 3 2007-12 원선 놀이지도 67 3 2011-06 원선 배구 I 95 3 2011-12 원선 기독교교과목개론 65 3 2012-06 원선 범죄학개론 79 3 2012-06 원선 보육학개론 73 3 2012-06 원선 아동수 · 과학지도 81 3 2013-06 원선 보육실습 94 3 2013-12 원선 보육시설운영과관리 84 3 2013-12 교양 태권도 I 75 3 2007-12 P 교양 호신술 72 3 2007-12 P 원선 컴퓨터그래픽 I 62 3 2012-12	*****[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 구분 자격종목명 학점 취득년월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구분 시험과목명 학점 합격일 교양 국어 4 2014 교양 국민윤리 4 2014 교양 사회학개론 4 2014 교양 국사 4 2015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과목 이수 ]***** 구분 학습과목명 성적 학점 이수년월 이수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선 회계관리 5 2013-12 원선 마케팅론 5 2013-12 원선 원가관리회계 5 2013-12 원선 재무회계 5 2014-08 원선 노사관계론 5 2014-08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목 이수 ]***** 구분 종목명 학점 이수년월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대학 이수 ]***** 구분 학습과목명 성적 학점 이수년도 이 하 여 락 *****	
--	---	--	--

인정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6	6	40	67
인정학점총계		119	
평점환산		78.39/100.0	
평점평균		2.67/4.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인의 학습과목별 성적을 위와 같이 증명함.]

2018년 05월 1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

6) 성적증명서(영문)

### TRANSCRIPT OF ACADEMIC RECORD

Credit Bank System,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14,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Date Issued: May 14, 2018  
Serial No.: 2018-0175095

Name: GILDONG HONG Date of Birth: October 10, 1910  
Major: Computer Network Degree: Associate degree of Engineering

Year	Course Title	Grade	Credit	Year	Course Title	Grade	Credit
*****[ The Courses Accredited by MOE ]*****							
2007	Japanese for Tourism I	70	3	Certificates ]**			
2007	Criminology	88	3	*****[ Bachelor's Degree Exam for Self-Education ]*****			
2007	Taekwondo I	75	3 P	2014	Korean Language		4
2007	Self-defence	72	3 P	2014	National Ethics		4
2007	Tourism Law	70	3	2014	Introduction to Sociology		4
2011	Play and Young Children	67	3	2015	Korean History		4
2011	Volleyball I	95	3	**[ Bachelor's Degree Exemption from the Examination Courses for Self-Education ]**			
2012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65	3	2013	Principles of Accounting	0	5
2012	Introduction to Criminology	79	3	2013	Principles of Marketing	0	5
2012	Introduction to Child Care & Education	73	3	2013	Cost Managerial Accounting	0	5
2012	Computer Graphics I	62	3	2014	Financial Accounting	0	5
2013	Teaching Mathematics and Science in Early Childhood	81	3	2014	Industrial Relations	0	5
2013	Practicum in Child Care & Education	94	3	TOTAL CREDITS EARNED <b>119</b>			
2013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Child care Program	84	3	Major Requirements <b>6</b>			
*****[ Curriculum at a Credit-Recognized School ]*****							
2005	Understanding of Computer		3	Major Electives <b>6</b>			
2005	History of Civilization		3	General Education Courses <b>40</b>			
2005	C Programming		3	General Electives <b>67</b>			
2006	Life and Environment		3	Average Grade <b>78.39 / 100.0</b>			
2006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	G.P.A <b>2.67 / 4.5</b>			
2006	Multimedia System		3	Remarks			
2011	Economics in a Life		3	1. Grade: 100-60 - Passing Grade 59- 0 - No Credits Earned			
*****[ Part-Time Enrollment ]*****							
2007	Practical Economics		3	President			
2007	Leadership management		3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07	Introduction to Child Study		3				
2007	Study on Child and Evaluation		3				
2007	Child Psychology		3				
**[ National Certificates or Officially Recognized Private							

Note: A transcript is official if it is printed on light blue security paper and if the NILE President's signature is printed in blue.

7) 학점인정증명서(국문)

제 2018-0175375 호					
<b>학 점 인 정 증 명 서</b>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학번)	101010-***** (2000-0004211)		
전 공	컴퓨터네트워크	학 위 종 류	공업전문학사		
학 점 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계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0	3	6	33	42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0	0	0	0	0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0	0	16	0	16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0	0	0	25	25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6	3	12	0	21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0	0	6	9	15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0	0	0	0	0
합 계	<b>6</b>	<b>6</b>	<b>40</b>	<b>67</b>	<b>119</b>
<b>인정 학점 총계</b>	<b>119 학점</b>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인의 인정학점을 위와 같이 증명함.					
2018 년 05 월 14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국가평생교육진흥원</span> </div>					
					담당자

8) 학점인정증명서(영문)

**CREDIT BANK SYSTEM**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14,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Serial No.2018-0175096
Date Issued : May 14, 2018

**Certificate of Credits Approved**

Name in Full: GILDONG HONG
Major: Computer Network

Date of Birth: October 10, 1910
Degree: Associate degree of Engineering

Credit Category	Major Requirements	Major Electives	General Education Courses	General Electives	Total
The Courses Accredited by MOE	0	3	6	33	42
National Certificates or Officially Recognized Private Certificates	0	0	0	0	0
Bachelor's Degree Exam for Self-Education	0	0	16	0	16
Bachelor's Degree Exemption from the Examination Courses for Self-Education	0	0	0	25	25
Curriculum at a Credit-Recognized School	6	3	12	0	21
Part-Time Enrollment	0	0	6	9	15
Skill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0	0	0	0	0
<b>Total</b>	<b>6</b>	<b>6</b>	<b>40</b>	<b>67</b>	<b>119</b>
<b>Grand Total Credits Approved</b>	<b>119</b>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has approved the above mentioned credits.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ote: A Certificate is official if it is printed on light blue security paper and if the NILE President's signature is printed in blue..



9)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제 2018-0175377 호					
<b>학 점 인 정 증 명 서</b>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학번)	101010-***** (2000-0004211)		
전 공	컴퓨터네트워크	학 위 종 류	공업전문학사		
학 점 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계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0	3	6	33	42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0	0	0	0	0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0	0	16	0	16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0	0	0	25	25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6	3	12	0	21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0	0	6	9	15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0	0	0	0	0
합 계	6	6	40	67	119
인정 학점 총계	119 학점				
* 최종 학점 인정일: 2018 년 04 월 27 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인의 인정학점을 위와 같이 증명함.					
2018 년 05 월 14 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담당자 <input type="text"/>

# VIII. 오시는 길

## Ⅷ. 오시는 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하철 이용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시청 삼거리에서 좌회전(무교로방면)→서울파이낸스빌딩 옆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시청 삼거리에서 우회전(무교로방면)→할리스(커피숍)건너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동아일보사 건너편

#### · 버스 이용

- 101번, 150번, 402번, 405번, 501번, 506번, 1711번, 7016번 버스 탑승→서울신문사 하차→광화문방면으로 50m 직진 후 우회전 후 130m 직진
- 종로09번, 종로11번 버스 탑승→프레스센터 하차→광화문방면으로 150m 직진 후 우회전 후 130m 직진

### 만든 사람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독학사관리본부 학사행정실  
: 신종수, 이삼경, 정구현, 양석표, 오영창, 김영배, 임소현

---

## 2018년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

발 행 2018년 5월

발행인 윤여각

발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전화: (국번없이)1600-0400  
팩스: (02)3780-9850

---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